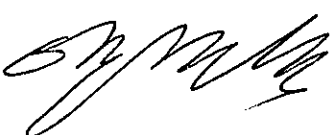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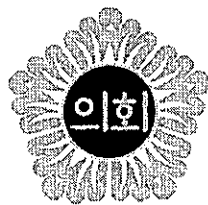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  
시민 결으로 한뼘 더!

## 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
2018. 4.



No. 122

**서울특별시의회**  
(의사담당관)

#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482)	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,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를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. -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의 규정에 대해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변경 사항을 반영 (안 제6조 제1항) ·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 시, 기준 금액의 감면 전·후가 불명확하여 감면 후로 명확화 함 ·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등	김희걸 의원 (찬성 11명) (도시안전건설)	2018. 4.17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

